

[붙임1]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안내서

2014

본 안내서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에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공지사항

1. 우리 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http://tl.kaia.re.kr>) 시스템에서 활용실적 입력 후 실적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 활용실적으로 반영됨
2.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은 활용실적 신고기간(매년 1월 2일 ~ 2월 말일)이 경과한 이후에는 추가접수가 불가능하며 실적신고 홈페이지에 입력된 사항에 대하여 서류접수 시 까지 수정가능하며 서류 접수한 뒤 진흥원 승인 후에는 수정·변경이 불가능함
※ 필요한 경우 당해년도 실적은 수시접수 가능
3. 보유한 교통신기술이 2개 이상인 경우 반드시 지정번호별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함.
4. 교통신기술 보유자가 다수인 경우는 대표기관을 선정하여 대표기관에서 활용실적자료를 취합하여 신고하여야 함
5. 활용실적 작성 시 금액단위는 천원이며(천원 미만은 절사), 실적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6. 모든 양식에는 법인인감 또는 직인을 날인하여야 함(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7. 신고된 자료는 공사 발주기관 및 제품 구매기관 평가자료로 활용되므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 입찰 또는 계약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조달청의 경우, 진흥원 승인시 활용실적 데이터 바로 전송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신고 목적 및 근거

■ 신고 목적

- 조달청에 온라인 전송하여 PQ심사 시 배점부여 근거자료로 활용
- 기재부, 도로공사 입찰참여시 배점부여 근거자료로 활용
- 활용실적증명서 발급 근거자료로 활용
-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 시 근거자료로 활용

■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에 대한 관련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제99조(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⑦ 교통신기술개발자는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0조(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등)② 교통신기술개발자는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 제46조(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 ① 영 제99조제7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교통신기술 현장 활용실적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교통시설공사 발주자가 발행하는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 증명서(교통시설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 다.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가목에 따른 발주자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라. 그 밖에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
 - 가. 발주자가 발행하는 제품납품 증명서
 - 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 다. 그 밖에 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작성 요령

1. 신고기간 및 접수

가. 활용실적 기간 : 전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간 실적

나. 활용실적 신고 기간 : 익년 1월 2일부터 2월 말일까지

다. 신고자료 접수처

- 온라인 접수 : 교통신기술 정보마당(<http://tl.kaia.re.kr>)

- 우편접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60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라. 문의처 : 기술인증센터 031-389-6483, 6353, 6487

2.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신고방법

가. 교통신기술 정보마당에서 로그인 후 활용실적 입력

* [참조] 활용실적 on-line 신고 안내서

나.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작성 요령에 따라 신고양식 및 실적입증자료 제출

다. 실적신고서[별첨_서식1] 및 활용실적내역서[시행규칙 별지 제24, 25호 참조],
실적입증자료 원본은 우편으로 제출

3. 제출서류 및 편철순서

가. 현장 활용실적

편철 순서	구분	내용
1	교통신기술 현장 활용실적 신고서 [별지 제1호]	○ 금액은 VAT 포함 금액으로 기입(천원미만 절사)
2	교통신기술 현장 활용실적 [별지 제2호]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 ⑭시공금액(기성기준)은 VAT 포함 금액으로 기입(천원 미만 절사)
3	증빙자료	○ 공공기관(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원도급 시 -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교통신기술공사내역서(신기술공종 해당 부분 별도 표시) ○ 민간업체 원(하)도급 시 -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 교통신기술공사내역서(신기술공종 해당 부분 별도 표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및 해당 부분 별도 표시) ○ 자기 공사 시 - 당해공사 인·허가관청 확인 착공신고필증 - 설계용역업체 확인 교통신기술내역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및 해당 부분 별도 표시) ○ 기술사용자의 경우 기술사용협약서 첨부 ○ 그 밖에 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제품 판매실적

편철 순서	구분	내용
1	교통신기술 제품 판매실적 신고서 [별지 제4호]	○ 금액은 VAT 포함 금액으로 기입(천원미만 절사)
2	교통신기술 제품 판매실적 [별지 제5호]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⑧판매금액은 VAT 포함 금액으로 기입(천원미만 절사)
3	증빙자료	○ 공공기관(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납품 시 - 해당기관 발행 납품증빙서류(금액정보 포함) ○ 소매 또는 대리점 판매 시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및 해당 부분 별도 표시) ○ 기술사용자의 경우 기술사용협약서 첨부 ○ 그 밖에 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별지 제1호]

교통신기술 현장 활용실적 신고서						
1. 회사개요						
신고업체 구분	기술개발자	☐	기술사용자	☐		
법인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전 화			팩 스	
주 소	(홈페이지)					
2. 교통신기술 신고 현황						
교통신기술 지정번호		지정일자		보호기간	~	
교통신기술 명칭						
3. 교통신기술 활용실적 신고(총괄)						
총 활용건수		건	총 활용금액 (VAT포함)		천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작성요령)						
1. 교통신기술 현장 활용실적 신고서는 교통신기술 지정건별로 각각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2. ☐ 은 V으로 표시한다.						
3. 교통신기술 현장 활용실적 신고(총괄)은 지정건에 대한 총 활용건수와 총 기성금액(VAT포함)을 기재한다.						
4. 활용실적이 없는 교통신기술은 활용금액란 및 별지 제2호 시공금액란에 “실적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첨 부)						
1. 교통신기술 현장 활용실적						
2. 증빙자료						

교통신기술 현장 활용실적

교통신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교통신기술의 명칭(지정번호) :

① 일련 번호	② 공사명	③ 발주자 명	※ ④ 업태 분류	※ ⑤ 발주자 분류	※ ⑥ 기술 분야	※ ⑦ 지역	※ ⑧ 계약 형태	※ ⑨ 계약 관계	※ ⑩ 활용 형태	⑪ 계약연 월일	⑫ 착공연 월일	⑬ 준공연 월일	⑭ 시공금액 (기성기준)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 계					천원									
<첨부서류>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교통시설공사발주자가 발행하는 교통신기술 현장 활용 실적 증명서(교통시설공사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1부 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다.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가목에 따른 발주자 외의 자가 도급 또는 하도급하는 공사만 첨부합니다) 1부 라. 그 밖에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작성요령> 1. 현장 활용 실적은 교통신기술별로 작성합니다. 2. 활용금액은 연도별 기성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 표시가 있는 난은 뒤쪽에서 해당 번호를 기재합니 다.				

(뒤쪽)

[교통신기술 현장활용 실적 작성 시]

※④ 업태 분류		※⑤ 발주자 분류			
1. 일반건설업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투자 및 출연기관	4. 교육기관	5. 민 간
2. 전문건설업	1-1. 국토교통부	2-1. 서울 2-11. 충남	3-1. 한국도로공사	4-1. 서울시 교육청 4-11. 충청남도 교육청	6. 그 밖의 발주자
3. 기술용역	1-2. 서울지방청	2-2. 부산 2-12. 전북	3-2. 한국토지주택공사	4-2. 부산시 교육청 4-12. 전북도 교육청	
4. 공공기관	1-3. 대전지방청	2-3. 대구 2-13. 전남	3-3. 한국수자원공사	4-3. 대구시 교육청 4-13. 전남도 교육청	
5. 연구소	1-4. 익산지방청	2-4. 인천 2-14. 경북	3-4. 한국농어촌공사	4-4. 인천시 교육청 4-14. 경북도 교육청	
6. 개 인	1-5. 부산지방청	2-5. 광주 2-15. 경남	3-5. 한국전력공사	4-5. 광주시 교육청 4-15. 경남도 교육청	
7. 그 밖의 업태	1-6. 원주지방청	2-6. 대전 2-16. 제주	3-6. 한국철도공사	4-6. 대전시 교육청 4-1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1-7. 지방항만청	2-7. 울산	3-7. 한국철도시설공단	4-7. 울산시 교육청 4-17. 그 밖의 교육기관	
	1-8. 국방부	2-8. 경기	3-8. 항만공사	4-8. 경기도 교육청	
	1-9. 환경부	2-9. 강원	3-9. 그 밖의 기관	4-9. 강원도 교육청	
	1-10. 기타 기관	2-10. 충북		4-10. 충북도 교육청	

※⑥기술분야		※⑦지역		※⑧계약형태	※⑨계약관계	※⑩활용형태
교통수단	1. 자동차 2. 열차 3. 항공기 4. 선박 5. 그 밖의 교통수단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17. 해외	1.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2.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3.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4. 수의계약 5. 그 밖의 계약형태	1. 도급계약 2. 하도급계약 3. 직영 공사 4. 그 밖의 계약관계	1. 시공 2. 납품 3. 설계 4. 기술사용료 5. 그 밖의 활용형태
교통시설	6. 도로 7. 철도 8. 공항 9. 항만 10. 그 밖의 교통시설					
운영및관리	11. 도로운영 12. 철도운영 13. 항공운영 14. 항만운영 15. 그 밖의 교통시설 운영					

297mm×210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교통신기술 제품 판매실적 신고서

1. 회사개요

신고업체 구분	기술개발자	☐	기술사용자	☐		
법인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전 화			팩 스	
주 소	(홈페이지)					

2. 교통신기술 신고 현황

교통신기술 지정번호		지정일자		보호기간	~
교통신기술 명칭					

3. 교통신기술 제품 판매실적 신고(총괄)

총 판매수량		개	총 판매금액 (VAT포함)		천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신기술 활용실적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귀하

(작성요령)

1. 교통신기술 제품 판매실적 신고서는 교통신기술 지정건별로 각각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다.
2. ☐ 은 V으로 표시한다.
2. 교통신기술 제품 판매실적 신고(총괄)은 지정건에 대한 총 판매수량과 총 판매금액(VAT포함)을 기재한다.
5. 제품 판매실적이 없는 교통신기술은 활용금액란 및 별지 제5호 판매 금액란에 “실적 없음”이라고 표시한다.

(첨 부)

1. 교통신기술 제품 판매실적
2. 증빙자료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

교통신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자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교통신기술의 명칭(지정번호) :

① 일련 번호	② 구입 기관	※③ 구입기관 분류	※④ 기술 분야	※⑤ 판매 지역	※⑥ 계약 형태	⑦ 판매 수량	⑧ 판매 금액	비 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 계							천원	
<첨부서류> 가. 발주자가 발행하는 제품납품 증명서 1부 나.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 등 납세증명서 1부 다. 그 밖에 제품판매 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작성요령> 1. 제품판매 실적은 교통신기술별, 연도별로 작성합니다. 2. 계약형태는 계약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3. ※ 표시가 있는 난은 뒤쪽에서 해당번호를 기재합니다.			

(뒤쪽)

[교통신기술 제품판매 실적 작성 시]

※③ 구입기관 분류				
1. 중앙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투자 및 출연기관	4. 교육기관	5. 민간
1-1. 국토교통부 1-2. 서울지방청 1-3. 대전지방청 1-4. 익산지방청 1-5. 부산지방청 1-6. 원주지방청 1-7. 지방항만청 1-8. 국방부 1-9. 환경부 1-10. 그 밖의 기관	2-1.서울 2-11.충남 2-2.부산 2-12.전북 2-3.대구 2-13.전남 2-4.인천 2-14.경북 2-5.광주 2-15.경남 2-6.대전 2-16.제주 2-7.울산 2-8.경기 2-9.강원 2-10.충북	3-1. 한국도로공사 3-2. 한국토지주택공사 3-3. 한국수자원공사 3-4. 한국농어촌공사 3-5. 한국전력공사 3-6. 한국철도공사 3-7. 한국철도시설공단 3-8. 항만공사 3-9. 그 밖의 기관	4-1. 서울시교육청 4-11. 충청남도교육청 4-2. 부산시교육청 4-12. 전북도교육청 4-3. 대구시교육청 4-13. 전남도교육청 4-4. 인천시교육청 4-14. 경북도교육청 4-5. 광주시교육청 4-15. 경남도교육청 4-6. 대전시교육청 4-16.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4-7. 울산시교육청 4-8. 경기도교육청 4-17. 그 밖의 교육기관 4-9. 강원도교육청 4-10. 충북도교육청	6. 그 밖의 기관

※④ 기술 분야		※⑤ 판매지역		※⑥ 계약 형태
교통수단	1. 자동차 2. 열차 3. 항공기 4. 선박 5. 그 밖의 교통수단	1. 서울특별시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인천광역시 5. 광주광역시 6. 대전광역시 7. 울산광역시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특별자치도 17. 해외	1.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2.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3.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4. 수의계약 5. 그 밖의 계약형태
교통시설	6. 도로 7. 철도 8. 공항 9. 항만 10. 그 밖의 교통시설			
운영 및 관리	11. 도로 운영 12. 철도 운영 13. 항공 운영 14. 항만 운영 15. 그 밖의 교통시설 운영			

297mm×210mm[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